

17년 다중이용업소법 기본서 정오표(2017.7.20.)

페이지(p)	오(수정 전)	정(수정 후)

P 137

(3) 대체(㉔은 삭제)

㉑ 기술인력 기준 : 다음의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㉒ 다음 ㉑ 또는 ㉓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㉑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㉓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P 137

실전연습 대체

Q.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기준으로 맞는 것은?

A.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B.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G.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 받은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1명 이상

M.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해설 B,G,M 틀림,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 받은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㉑

P 151

평가대행자의 등록 1)㉑㉒ 대체

㉑ 인력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 받은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2명 이상

P 156 15번 대체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기준은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라

해설

B,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기준은 A 및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B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P 226

- (1) 제14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P 247

[별표 5]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제14조 관련) <개정 2016.12.30.>

1. 기술인력 기준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2016. 12. 30.>

2. 시설 및 장비 기준 :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화재 모의시험이 가능한 컴퓨터 1대 이상

나. 화재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다. 삭제<2014.12.23.>

※ 비교

1.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은 그 중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본다.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보유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제1호가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기술사로 볼 수 있다.